

1. 개정이유

상표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,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증거조사·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(안 제67조 변경)
-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특허법·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정합하도록 변경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”을 “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증거조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통해 증인신문, 현장검증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자는 제6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) ①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	제67조(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) ①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